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1993.11.15. 제 정	2001.10.30. 전면개정	2013.12.28. 일부개정
1997.05.08. 개 정	2009.02.18. 전면개정	2015.01.11. 일부개정
1998.03.30. 개 정 (일부 연혁 유실)	2009.09.25. 전면개정 2010.10.03. 전면개정	2015.03.29. 일부개정 2016.05.29. 일부개정
2000.04.06. 개 정	2011.02.06. 일부개정	2016.12.23. 일부개정
2001.09.11. 개 정	2013.10.08. 일부개정	2017.11.30. 전부개정

전 문	
제1장	총칙 1~12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13~16
제2절	학생총회 17~25
제3절	학생총투표 26~33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34~50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51~65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66~67
제2절	총학생회장단 68~75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76~81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82~86
제5절	상설위원회 87~96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통칙 97~103
제2절	학부·학과학생회 104~105
제3절	새내기학생회 106~108
제4절	동아리연합회 109~112
제5장	전문기구
제1절	통칙 113~120
제2절	감사원 121~126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127~130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131~135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136~140
제6장	특별기구 141~151
제7장	선거 152~159
제8장	재정
제1절	통칙 160~164
제2절	회계·심의 165~170
제3절	기증기구회계 171~176
제4절	격려기금 177~180
제5절	문화자치기금 181~184
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개정 185~189
제2절	세칙·규칙 190~191
제3절	해석·규정집 192~193
부 칙	

전 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간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 ③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④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본회는 집회, 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 ⑧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가 있다.
- ⑨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⑩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⑪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⑫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위에 나타난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④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5. 특별기구

제8조(대표자) ①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 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②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3.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4.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5. 새내기학생회장단
6. 동아리연합회장단
②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①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

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 ④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①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 할 수 있다.

③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 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 ④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3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4조(위계) 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②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①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세칙)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절 학생총회

제1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8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형식)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0조(종류)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제21조(권한)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③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②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23조(소집) ①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②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③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결과공고)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26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8조(권한)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4.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5.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제29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30조(시행) ①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②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1조(성립·의결요건) ①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결과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3조(정책투표) ①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2.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③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④ 정책투표는 제29조에 따른 투표권자 1/8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4조(지위)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총회 아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학대회의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동아리연합회장단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4. 새내기학생회장단
 5. 각 자치기구 소속 인원 비례 대의원
- ②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③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36조(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37조(의장)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소집) ① 전학대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학대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학대회 재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6.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7.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8.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 ③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임시회의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제2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학대회 의장이 전학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업무)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전학대회 재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5. 학생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6. 그 밖에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40조(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전학대회는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학생총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제42조(결정·집행 관련 사항)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산하기구 관련 사항) ①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 인준·해임안을 의결한다.

- ② 전학대회는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징계·제명·합병안을 의결한다.
- ③ 전학대회는 감사보고서 및 번역감독보고서 결과에 따른 산하기구의 예산삭감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①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2. 피선거권의 박탈
3. 선거권의 박탈
4. 제4조제4항에 따른 본회 자치활동의 참여권 박탈
 - ③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출석정지
 3. 중앙운영위원 자격정지
 - ④ 전학대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학대회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전학대회 출석정지
 3. 대의원 자격정지 (중앙운영위원회를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
 - ⑤ 총학생회장단에게는 제2항제4호와 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할 수 없다.
 - ⑥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 혹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해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대상자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①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②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③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④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회칙·세칙·규칙·원규에 관한 사항) ① 전학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전학대회는 세칙·규칙을 제정·폐지할 수 있다.
③ 전학대회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본회 산하기구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전학대회는 학칙을 포함한 「KAIST 원규」의 제·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47조(대외적 사항) ①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 해임에 대한 사항
 2. 상설위원회·전문기구·특별기구의 인준·제명·징계·합병에 대한 사항
 3. 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 및 세칙·규칙의 제정·폐지, 원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대한 결정
 2.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대한 사항

제49조(서면의결)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1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52조(중앙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
- ②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 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54조(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55조(소집) 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달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7일 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④ 의장은 회의 3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제4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61조(대외적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 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② 학생대표위원회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62조(위원회)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 ③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서면의결)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1.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 2.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 3.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제6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통칙

제66조(업무집행)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67조(구성)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중앙집행위원회
- 3. 상설위원회

4. 각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의 집행기관

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68조(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70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리) ①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②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③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④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73조(대외적 권리) ①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제47조 제2항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다.

제74조(의무)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탄핵)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 ④ 제2항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 ⑤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⑥ 탄핵안은 학생총투표일 때 제31조, 전학대회일 때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76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77조(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1. 중앙집행위원장
2.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제79조(국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③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80조(업무)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1조(집행조정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

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 ③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3.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제83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자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②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제84조(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5조(업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87조(지위)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제88조(구성 및 목적)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3.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제89조(인준)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 ③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2. 소개서
 3. 연간 사업계획서
 4. 자치규칙
 5. 예산안
 6.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제90조(위원장단) ①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91조(업무) ①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③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92조(협의 의무) ①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

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제93조(재정)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 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제9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2. 제92조 협의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3. 회칙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제명·합병) ①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 할 수 있다.

1.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상설위원회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③ 단, 상설위원회 제명·합병 안건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경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6조(자치규칙) ①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②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통칙

제97조(정의)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98조(의결기관) ①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회장단) ① 자치기구회장은 해당 자치기구를 대표한다.

② 자치기구는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단) 선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④ 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집행기관) ① 집행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기구의 사업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결기관에 사업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운영) ① 자치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② 자치기구는 본회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기구회장단 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2. 그 밖에 자치기구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102조(재정) ① 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자치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자치기구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독립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제103조(자치규칙·준칙) ① 자치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②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자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기구는 자치규칙 및 내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치기구의 자치규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치규칙 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기구 준칙」을 따른다.

제2절 학부·학과학생회

제104조(지위)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5조(회원) ①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②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2.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3.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4.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④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새내기학생회

제106조(지위)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7조(회원) ① 새내기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②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소속된 사람 중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새내기학생회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회원의 정의 및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④ 동시에 새내기학생회 및 학부·학과학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제108조(업무) ① 새내기학생회는 본회 및 본회 집행기구의 업무 중 새내기과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과정학부 학생 및 새터반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자치적으로 집행

한다.

- ③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제4절 동아리연합회

제109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학내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110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분과) ①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 ②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③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2조(업무) ①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및 학내 문화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는 교내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③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장 전문기구

제1절 통칙

제113조(정의)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제114조(구성)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사원
2. 문화자치위원회
3. 소통국제화위원회
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15조(인준)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 ③ 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

를 제출 받아 심의한다.

1.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2. 소개서
3. 연간 사업계획서
4. 자치규칙
5. 예산안
6.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제116조(지위) ①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②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③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17조(업무 보고) 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제11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전문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0조(제명·합병) ① 전문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 차원에서 전문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전문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감사원

제121조(목적)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2조(업무)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123조(감사에 대한 권한)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에 따라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에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예산삭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4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①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1. 본회 대표자
2. 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3.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4.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5. 본회 특별기구 위원

제126조(감사시행세칙)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절 문화자치위원회

제127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8조(업무)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9조(구성)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제4절 소통국제화위원회

제131조(목적)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2조(업무)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①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 가보고서를 보고한다.

제134조(구성)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36조(목적)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37조(업무)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9조(구성)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제6장 특별기구

제141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 및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여 그 지속의 필요성을 본회가 인정한 학생자치단체이다.

제142조(성립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1.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2.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3.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제143조(인준)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요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제144조(재심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제145조(명부 관리) 중앙집행위원회는 특별기구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146조(업무) ① 특별기구는 전학대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47조(협의 의무)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8조(재정) ①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②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0조(제명·합병) ①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는 경우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한 경우

3.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들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51조(자치규칙) ①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②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선거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제153조(선거시기)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①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②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1/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학교 징계 여부, 전공 학부학과, 평점, 경력, 재학기간 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재학기간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는 입후보자 공고 시 함께 공개한다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157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제158조(인수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59조(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1절 통칙

제160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61조(자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1.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2.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제162조(수입)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63조(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②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4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회계·심의

제165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②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2.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167조(심의 원칙) ①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②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제168조(사전심의) ①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④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제169조(재심의) ①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② 재심의는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절 기층기구회계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3.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4.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5.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6. 소속 인원 비율
7.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제173조(구성)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74조(의장)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75조(소집) ①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 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전학대회에서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3. 학부·학과학생회 혹은 새내기학생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제176조(의결)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격려기금

제177조(목적)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①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3.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4.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5. 학부·학과학생회장
 6.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②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9조(지급일)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①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②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181조(목적)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제182조(적용범위)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제183조(구성 및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①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②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9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개정

제185조(개정안 발의) ①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②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86조(개정안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7조(개정안 심의) 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8조(개정 의결 및 정리) 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는 후, 저축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9조(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②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대의원 명단
- 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2절 세칙·규칙

제190조(세칙·규칙) ①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 회칙에 위반되는 자

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③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④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3절 해석·규정집

제192조(해석) ①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93조(규정집) ①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

5.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 ② 본회 산하기구는 자치규칙의 수집과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선거시행세칙

[KAIST 학부 총학생회 세칙 제1호]

2017.11.30. 제 정

제1장	총칙	1~7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8~9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2
제2절	선거운동본부	23~26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기간과 투표일	27~29
제2절	선거인명부	30~34
제3절	후보등록	35~38
제4절	선거운동	39~58
제5절	징계	59~65
제6절	재정	66~72
제5장	투표·개표	
제1절	통칙	73
제2절	투표	74~84
제3절	투표성립	85~86
제4절	개표	87~88
제5절	당선	89~92
제6절	재투표·재선거	93~94
제6장	선거 기록물	95~96
제7장	보칙	97~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 제7장에 의한 총선거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선거는 본회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총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④ 총선거는 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며 건전한 선거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제2호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 관리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선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정의) ① 본 세칙에서 "공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본회 대표자

2. 제1호의 직을 겸하지 않는 자치기구회장(단)

3.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4. 상설위원회위원장단

5.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6. 전문기구장

7. 특별기구장

② 본 세칙에서 "학내"란 다음 각 호로 말한다.

1. 구성캠퍼스 본원

2. 문지캠퍼스

3. 본원 밖 기숙사

4. 본교 셔틀버스

제6조(선거사무협조)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립의무)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직위로써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8조(선거권)** ①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여부의 확인은 예비후보공고일까지 등록된 정회원 명단과 투표일 하루 전까지 확인한 재학 중인 준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9조(피선거권) ①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본회 정회원인 사람
 2.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②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1.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2.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제11조(업무와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2.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3.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4.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5.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6.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7.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8.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9.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제12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장단) ①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위원장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제14조(사무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

제15조(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칙」 및 본 세칙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진행에 임해야 한다.

제16조(위원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회 회칙 및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본회 회원이 아닐 때
 5. 징계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 때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중앙운영위원
2. 중앙선거관리위원
3.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가 접수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체 없이 심의·의결한다. 단,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통한 해임 요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 제17조(위원의 사임·추가입명)**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추가 임명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자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소집요구
-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자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 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2.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징계 부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토론회 등 그 밖에 선거운동기간 내의 세부 업무에 대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전까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제반 업무 종료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실무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실무단으로 할 수 있다.

1. 중앙집행위원
2. 본회 각 자치기구 집행위원
3. 모집된 본회 정회원

② 중앙집행위원회, 본회 각 자치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무단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3조(선거운동본부)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③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는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내부호선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선거운동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사임한 경우 자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을 사임한 사람은 선거기간 종료 전까지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제25조(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해당 선거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인 사람
2. 공직에 있는 사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6조(업무 및 의무) ① 선거운동본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기간과 투표일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한다.

- ② 선거기간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연장투표 여부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선거기간) ①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총선거시행공고일
2. 예비후보등록기간
3. 총선거위탁기간
4. 후보등록기간
5. 선거운동기간
6. 투표일
7. 개표일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하루 전까지 7

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선거기간
2. 사전투표 유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
3. 예비후보등록서류
4. 후보등록서류
5. 추천인서명판서류
6.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8. 제14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인명부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제29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후보등록

제35조(동반 출마)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해야 한다.

- 제36조(예비후보등록)** ① 총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예비후보등록서류와 추천인서명판을 예비후보등록기간 내에 전자우편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예비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비후보의 이름
2. 학과
3. 재학 학기
4.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
5. 학사 경고 횟수
6. 예비후보의 약력
7.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입후보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하고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④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8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37조(후보등록) ①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3.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4.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5.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편집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 ②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후보의 이름
 2.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4. 후보의 사진
 5. 선거공약
- ③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2.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2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4.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 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 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제38조(추천인서명) ① 추천인서명은 예비후보공고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공고 이전의 추천인서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② 추천인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③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④ 추천인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만을 포함한다.

1. 후보 이름
2. 후보 사진
3. 후보 약력
4. 출마 동기

5. 서명용지

⑤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3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본회 회원의 선거·후보에 관한 단순한 의사 개진 및 의사표시
2. 본회 산하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 투표독려행위

② 본회 회원 및 학내 단체의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제외한 유세 등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제40조(투표독려) 다음 각 호의 투표독려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숙사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개진이 포함된 경우
3.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 녹음기 ·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로서, 후보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

제41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등록후보공고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42조(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선거운동은 기숙사 호별 방문을 제외한 방법으로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제43조(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 제한) ① 학내 언론기관(카이스트신문사, KAIST Herald, VOK 등)은 선거 관련 의사 개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한다.

② 본회 산하 기구 혹은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44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
2. 합동유세

3. 후보자토론회·인터뷰 참가
4. 선전물의 게시·배포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5조(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별이는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 ②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자유롭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③ 특정 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46조(합동유세) ①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 ② 합동유세장소, 유세 시간 및 순서는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 ③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후보자가 합동유세 시작 시간 전에 유세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유세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④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본의 선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7조(후보자토론회) ①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합동유세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③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있다.
- ⑥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선전물) ①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12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③ 선전물의 사전심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49조(정책공동자료집) ①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 ② 총학생회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4쪽 이상 12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 ④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0조(유인물) ① 유인물이란 A3 크기 이하, 12쪽 이하로 발행하는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 ② 유인물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제51조(게시물) ①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선거운동 시작일 전일까지 A2 규격의 대표 포스터 1종을 포함한 최대 3종류의 도안을 제출한다.
- ③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1. 공중에 매다는 행위
 - 2. 바닥에 부착하는 행위
 - 3. 계단에 부착하는 행위
 - 4. 유리창 및 유리문에 부착하는 행위
 - 5.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6.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④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1폭(1폭=110cm)×8마(1마=90cm) 이하로, 세로현수막의 경우 1폭×10마 이하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 ⑤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2조(온라인 선전)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 2. SNS 계정
- 3. ARA
- 4.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5.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 제53조(선거운동복)**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복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복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2종류로 제한한다.
- ④ 선거운동복은 학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다.

- 제54조(선전노래)**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개사 등의 형태로 선전노래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선전노래는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 제55조(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본부의 명의로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6조(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①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 ②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 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 발언을 하도록 명령하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 본부의 정정 및 사과 발언은 익일 8시부터 24시 내에 게시해야 한다.

- 제57조(부정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 유도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
3. 선거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직·간접적 선거 방해
6. 유세 방해 및 선전물 훼손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9.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10. 후보 인신공격

11.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의 선거운동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②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 ③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8조(기타사항)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

제5절 징계

제59조(징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은 사항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명백히 훼손한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 ②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로 대체한다.
-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61조(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1. 제24조 및 제25조의 선거운동본부 구성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2. 제38조제2항의 학내가 아닌 공간에서 추천인서명 행위를 할 때
3. 제42조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4. 제45조의 개인유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
5. 제48조제3항의 선전물 사전심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6. 제53조제2항의 선거운동복 사전심의 결과 기준이 맞지 않을 때5.
7. 이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62조(주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3. 제23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때
7.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53조의 선거운동복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54조의 선거노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55조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1. 유세, 선전물 등의 선거운동 상에서 타 후보,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때
12. 이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제63조(경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제36조제4항의 미비한 예비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8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3. 제37조제5항의 미비한 후보등록서류를 기한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할 때
 4. 제38조제3항의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행위를 할 때
 5.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6. 제44조의 선거운동을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원이 할 때
 7. 제56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8.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9.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제64조(징계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이의제기)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절 재정

제66조(재정) 총선거의 재정은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와 학교지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7조(예산 집행) ① 학생회비의 중앙회계로부터 지급된 예산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1인의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비용) ① 선거비용은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 등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부정선거운동 비용을 포함한다.

②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지원금 및 선거운동본부의 자체 재산으로 편성한다.

제69조(선거비용의 상한)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의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②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의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제70조(선거운동지원금) ① 선거운동지원금은 학교지원금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운동지원금은 유인물, 게시물, 선거운동복 등에 집행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지원금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2.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운동지원금은 최대 50만원

④ 선거운동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심의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입회 하에 선거 운동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

제71조(선거운동본부의 회계 감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선거일 전일 1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2조(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일체의 증빙과 영수증을 포함하는 회계 장부와 결산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투표·개표

제1절 통칙

제73조(용어 정의)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 중복투표수: (두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수의 합) – (두 번 이상 투표한 유권자의 수)
2. 대리투표수: 이중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 한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했음이 적발된 경우의 수
3. 가 투표수: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 총합) – (중복투표수) – (대리투표수)
4. 가 투표율: (가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5. 실 투표수: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6. 실 투표율: (실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7. 오차: 가 투표수와 실 투표수의 차의 절댓값
8. 오차율: (오차) / (총 유권자 수)
9. 득표율: (해당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의 득표수) / (실 투표수 – 무효투표수)

제2절 투표

제74조(투표 방법) ① 총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①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 ②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①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일 5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투표소 변경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투표소 안내, 투표 유의사항 등 투표 관련 안내문을 부착 또는 배포해야 한다. 그 밖에 선전물에 대한 부착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사무처리를 위해 투표소 별로 1인 이상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하며, 투표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실무단원,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 중 선정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사무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아닌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 ⑤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 ⑥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⑦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제78조(투표자 확인) ① 선거인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종용하여 해당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79조(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학생증 또는 소정의 증명서(재학증명서 및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 확인
3. 투표자의 본인 서명
4. 투표사무원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80조(투표참관인)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투표소 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나 선거운동본부원 중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④ 해당 투표소에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대 선거운동본부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1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도중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책임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투표관리책임자의 판단 전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단, 합의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82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와 다른 선거운동본부 측 투표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 투표관리책임자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그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경우
4.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부한 선거운동본부명과 참관인 본인의 성명이 기입된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83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시작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②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84조(투표종료 시 투표함 이송) ①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③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3절 투표성립

제85조(투표성립요건)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개표

제87조(개표) ①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②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③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④ 개표 철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자수 공고

2.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선거운동본부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 및 결과공고

5. 최종 결과 발표

⑤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⑥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정해진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표를 한 것

5. 투표소에서 날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없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를 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5.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으나 지정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제5절 당선

제89조(당선 기준) ① 개표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과반일 시 당선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2.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3. 득표율 1, 2위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을 때

4. "지지선본 없음"란에 기표한 사람의 수가 1위 후보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

제90조(당선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부·학과, 학번

2.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투표율 및 당선자의 득표율

4. 투표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율을 포함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하였거나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24시간 이내로 공고한다.

제91조(이의제기) ①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2조(당선 확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①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②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제93조(재투표·결선투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1. 제8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3.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1. 제87조제2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선거 기록물

제95조(선거 기록물 관리)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제7장 보칙

제97조(해석) 「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제98조(선거시행규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정운용세칙

[KAIST 학부 총학생회 세칙 제2호]

2009.09.25. 제 정	2013.10.08. 일부개정
2010.10.03. 일부개정	2013.12.28. 일부개정
2011.02.06. 일부개정	2017.11.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4
제2장 재정운용	5~7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8~13
제2절 예산·결산	14~18
제4장 학생회비 운용	
제1절 학생회비의 책정·분배	19~20
제2절 중앙회계	21~24
제3절 기충기구회계	25~26
제4절 격려기금	27~29
제5절 문화자치기금	30
제5장 보칙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 각 산하기구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제4조(산하기구의 책임) ① 본회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②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재정운용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재정운용

제5조(재정운용의 원칙) 본회 산하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관리해야 한다.

제6조(영수증 관리) ①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업 진행일, 집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간이영수증은 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제7조(자산 관리) ① 본회 각 산하기구는 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회칙」 제161조에 따른 고정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각 기구 회계책임자의 재량으로 목록에 특정 자산을 제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 유형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나뉘어 정의한다.

1. 비품: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거나 취득 단가가 5만 원 이상인 고가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

2. 소모품: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유형의 자산

③ 고정자산 목록에는 소모품이 아닌 각 단체 소유의 유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④ 고정자산 목록과 실제 보유 자산의 일치를 위해서 각 기구는 회계1분기, 회계3분기에 고정자산 목록 일치 작업을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 처리 원칙

제8조(회계연도) 본회 및 본회 각 산하기구는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예산·집행·결산한다.

제9조(총수입) ① 총수입은 학생회비 수입,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총합을 말한다.

② 학생회비 수입 예산안은 전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학교지원금 예산안은 전년도 같은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③ 후원 등의 사업별 수입금은 해당 사업 항목 내에서만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총지출)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제11조(집행의 원칙) ①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사전동의) ①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3%, 연간 5%를 초과하는 본회 사업 상에서 후원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13조(회계 작성 원칙) ① 회계자료는 단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2절 예산·결산

제14조(예산편성) 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 단체들의 예산안·결산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③ 전년도 회계연도 활동내역과 결산, 당해 회계연도 활동계획서와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산안 논의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예산안은 다음 각 호로 나눠 작성하며 각 항목 별로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대비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1. 대항목: 「학생회칙」 166조에 따른 회계 분류

2. 중항목: 각 산하기구 별 예산

3. 소항목: 일정한 기간 동안 단일한 사업명으로 묶어낼 수 있는 범위의 예산(경우에 따라 세분화 가능)

4. 세부항목: 영수처리가 가능한 지출 단위

⑤ 예산에는 예비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안 비율) ① 대항목 비율은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비율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계에 속한 집행기구 등의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기층기구회계에 속한 각 자치기구 예산의 비율은 매 학기 초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결산안 작성) ① 결산안은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며 예산안대비집행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 결산안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평가) ① 전학대회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각 기구 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회칙」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② 1항의 이유로 결산에 대한 사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대표와 회계책임자의 공동 명의로 사과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고) 전학대회에서 심의된 예산안·결산은 본회 회원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각 기구 별 예산안·결산을 취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학생회비 운용

제1절 학생회비의 책정·분배

제19조(학생회비 책정) ① 학생회비는 「학생회칙」 제48조에 따라 전학대회 의결에 따라 책정한다.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고지한다.

② 학생회비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학생회비 분배) ① 학생회비는 회계연도 시작 전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②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제2절 중앙회계

제21조(중앙회계 적용 대상) 중앙회계는 의결기구 재정, 집행기구 재정,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등 본회 제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제22조(의결기구 재정) ①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③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중앙집행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안·결산에 포함시켜 전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제23조(집행기구 재정) ①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누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중앙집행위원회 LT, 회의비 포함)

2. 국서·위원회별 재정: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별 활동과 총학생회장단·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

3. 그 밖에 재정: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4. 이월금

② 상설위원회를 포함한 집행기구 및 각 산하기구의 집행기관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단체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LT, 회의비 포함)
2. 정기사업비: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3. 비정기사업비: 상설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의 재정
5. 이월금

제24조(집행조정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집행기관, 전문기구 등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81조에 따라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재정분배에 관한 집행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 작성
2.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전에 집행조정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들의 집행기관장 혹은 재정 담당자는 해당 집행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집행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절 기충기구회계

제25조(기충기구회계 적용 대상) ① 기충기구회계는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과 사업집행에 사용된다.

② 기충기구회계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있다.

제26조(기충예산심의회의) ① 총학생회장은 기충기구회계 적용 대상 기구들의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학생회칙」 제175조에 따라 기충예산심의회의를 개최한다.

② 기충예산심의회의는 「학생회칙」 제172조에 따라 재정분배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을 조정한다.

③ 소속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분배 예산 산출 과정에서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기충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구 별 배정 예산이 결정되면 총학생회장은 5일 내로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절 격려기금

제27조(적용대상) 격려금 지급 대상은 「학생회칙」 제17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격려금 책정) ①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②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격려기금 관리) ① 격려기금은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② 격려기금은 격려금 지급 인원수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월금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기의 격려금 적용대상 명단
2. 이월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30조(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 ①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② 그 밖에 문화자치기금 관리 및 배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재정운용규칙)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감사시행세칙

[KAIST 학부 총학생회 세칙 제3호]

2011.02.06. 제 정
2013.10.08. 일부개정
2013.12.28. 일부개정
2015.01.11. 일부개정
2017.11.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5
제2장	감사원	6~16
제3장	감사	
제1절	통칙	17~21
제2절	회계감사	22~25
제3절	직무감찰	26
제4절	감사 결과의 처리	27~30
제5절	재심의	31~32
제6절	감사보고	33~37
제4장	보칙	3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감사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제도를 내실화하고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의 감사 업무는 본회 산하기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피감기관의 감사에 적용한다.

② 산하기구의 자체감사활동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1.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2.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3. 전문기구: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4. 특별기구
5.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6.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①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 감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 산하기구는 소속 위원의 파견 등의 감사에 관한 감사원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감사원

제6조(목적)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지도록 하여 본회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감사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 받은 기구이다.

제7조(지위) 감사원은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8조(업무와 권한)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피감기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
2. 피감기관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3. 피감기관 사무 및 그 소속 위원의 직무감독
4. 감사 결과에 따른 피감기관 시정요구 혹은 징계요청

5. 감사와 관련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업무
6. 그 밖에 본 세칙에서 규정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위원)**
- ①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②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③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11조(감사원장) ①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감사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3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위원은 본회 회칙 및 본 세칙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기관의 업무상 유연성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제15조(사무실) ①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는 감사원의 원활한 사무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 공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의 사무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타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사무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장 감사

제1절 통칙

제17조(감사 분류) ① 감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별감사: 제보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청하거나,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사안에 관련한 특정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3. 일상감사: 본 세칙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 ② 감사는 다음 호의 항목에 관하여 시행한다.
1. 회계감사: 회계·결산의 적절성 및 투명성 검사
 2. 직무감찰: 사무 및 위원의 직무 적절성 감찰
- ③ 감사는 서면감사·실지감사·출석답변 외 그 밖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18조(서면감사) ① 피감기관은 정기감사 혹은 특별감사 시 감사원이 정한 기간까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전자사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실지감사)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勘查)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감기관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제21조(제보 및 조사) ①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감사

제22조(회계감사) ①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 ②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1. 1분기 검사
 2. 2·3분기 검사

3. 4분기 검사

③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제23조(감사평가) 회계감사 평가기준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피감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점수화 하여 평가한다.

제24조(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수입·지출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안·결산과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회계 적절성을 감사한다.

제25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본회 산하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제3절 직무감찰

제26조(직무감찰) 감사원은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피감기관의 사무와 소속한 위원의 직무 적절성
2. 본회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를 행하는 자의 직무

제4절 감사 결과의 처리

제27조(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감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

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해당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요구 등)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5절 재심의

제31조(재심의 청구)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변상 판정 및 징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제6절 감사보고

제33조(보고의 의무) 감사원은 정기 전학대회에서 그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34조(회계감사보고) 정기회계감사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의 확인
2. 제2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점수 및 감점, 주의 항목
3.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4.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5.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35조(직무감찰보고) 직무감찰보고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직무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①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②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제37조(수시보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총학생회장단

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8조(감사원 규칙) ①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 사무처리 등의 사항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원 규칙이라 한다.

② 감사원 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39조(감사시행규칙) ① 피감기관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감사시행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개정 전 피감기관에 보고 및 합의를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의결기구운영세칙

[KAIST 학부 총학생회 세칙 제4호]

2011.02.06. 제 정
2013.10.08. 일부개정

2015.01.11. 일부개정
2017.11.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6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7~12
제3장	의사 진행	
제1절	회의의 구성	13~21
제2절	안건	22~26
제3절	발언	27~30
제4절	표결	31~34
제5절	회의록·결과공고	35~36
제4장	학생총회 운영	37~39
제5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	40~42
제6장	보칙	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의결기구 운영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세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회의에 적용한다.
②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① 본 세칙에서 "회의체"란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 단체의 최고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본 세칙에서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 활동을 말한다.
③ 본 세칙에서 "구성원"이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말한다.
④ 본 세칙에서 "의결"이란 회의체에서 결정된 단체 의사를 말한다.

제5조(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 등은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명명법) ① 회의체 별 각 회의는 기본적으로 "0000(해당 연도) 제0차 회의체명"이라 명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속칭할 수 있다.
1. 학생총회·학생총투표: 00(해당월).00(해당일). 학생총회·학생총투표
2. 전학대회: 0000(해당 연도) 상·하반기 정기·임시 전학대회 혹은 0000(해당 연도) 00(해당 월) 정기·임시 전학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00(해당 월) 정기·임시 중앙운영위원회
② 회의 명명 시 차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일부터 개시하여 다음 총학생회장단 임기 전까지 누적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7조(공개의 원칙) ① 본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본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
②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의 방청권을 갖는다.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하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본회 회의의 결과와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8조(정족수의 원칙) 본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회칙, 세칙, 규칙에 의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9조(일의제의 원칙) 본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토론 자유의 원칙) ① 본회 회원은 본회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고, 회의 구성원에게 토론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하에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다수의 의견이 폭력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 진행

제1절 회의의 구성

제13조(의결권) 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② 본회 각 회의체에서는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① 본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권상정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서기) ① 본회 각 회의체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제16조(소집) ① 의장은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의 소집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구성원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의 장소
2. 회의 일시
3. 구성원 명단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경우에 한한다.)
4. 소집 경위 및 과정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 ②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③ 회의의 개회 준비는 의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의 대표자는 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7조(의사정족수) 본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18조(회순) ① 개회로부터 폐회에 이루는 회순은 각 호의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의장인사
4. 보고사항
5. 안건심의 순서 확정
6. 안건심의
7. 성원점검
8. 폐회선언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회: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
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3. 휴회: 회의 도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속회하기 전까지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4. 폐회: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

제20조(회의의 폐회·유회·휴회) ① 폐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이 성원점검 후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회를 선포한다.

제21조(의사조정위원회) ① 의장은 회의 개회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안건

제22조(안건) ① 안건이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 ③ 안건의 제출은 「학생회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안건의 제출자는 제18조제5호의 안건심의 순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로는 회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안건의 심의) ①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을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제24조(토론)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제25조(안건의 처리과정)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안건 상정
2.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4.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5.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6. 안건에 대한 표결

제26조(토론종결·재심의 등) ①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재심의·수정·회부·연기는 구성원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은 제출한 동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의결한다.

② 토론종결동의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동의 제출 사전에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명씩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

- ③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 ⑤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⑥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제3절 발언

- 제27조(발언권)** ①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②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③ 구성원은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발언 횟수와 시간)** ① 의장은 구성원의 균등한 발언을 위해 특정 구성원의 반복적인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의 방법을 무제한토론진행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토론 전에 구성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① 신상발언이란 자신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 구성원들에게 해명하는 발언이다.
- ② 의사진행발언이란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축조심의,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 ③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의장에게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일시 중단시키고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⑤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30조(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때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키고 회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표결

- 제31조(표결)** ①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 제3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③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④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산합이 재석인원에 맞지 않는 경우 의장은 재석인원 및 찬성, 반대, 기권수를 재확인한다.

제33조(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및 서기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5절 회의록·결과공고

제35조(회의록) ①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제5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결과
 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회의록은 제15조에 따라 서기로 지정된 중앙집행위원회가 작성한다.
 - ④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제35조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제35조제7호의 안건 별 표결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체 운영

제1절 학생총회·학생총투표

제37조(소집일 결정) 「학생회칙」 제23조 혹은 제28조의 소집·시행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회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회일은 소집·시행요구에 포함된 개회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회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제38조(학생총회 운영 방법의 결정) ① 학생총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 이전에 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순, 각 안건 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상학생총회에 따른 소집은 제1항의 의사조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중앙총회기획단) ① 학생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총회기획단을 구성한다.

② 중앙총회기획단은 중앙집행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중앙총회기획단은 학생총회의 개회 성사, 선전,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총회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개회를 준비한다.

제40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모집을하거나 추천에 의해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보조한다.

제41조(정책투표 운영) ①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의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② 정책투표 시행일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보조를 통해 정책투표를 시행한다.

③ 정책투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투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제42조(비례대의원의석의 배분) ① 내부 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③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 ④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제43조(대의원 명단) ①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비례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의 명단을 전학대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학대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대의원 명단을 공고한다.

제44조(중앙운영위원회 명단) ① 자치기구는 봄 학기 개강 후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봄학기 개강 이후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 명단을 공고한다.

제45조(겸직 및 대리 금지) ①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②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다른 전학대회 대의원 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대리참석을 금지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사무처리세칙

[KAIST 학부 총학생회 세칙 제5호]

2017.11.30. 제 정

제1장	총칙	1~5
제2장	사무처리	6~7
제3장	문서 작성	8~12
제4장	기록물의 관리	13~17
제5장	기록물의 공개	18~21
제6장	개인정보 보호	22~2384
제7장	보칙	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사무처리와 「학생회칙」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본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본회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본회의 각 산하기구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① 본 세칙에서 "기록물"이란 본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② 본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지·보존·공개·활용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③ 본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본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자"란 본회의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기록물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⑤ 본 세칙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⑥ 본 세칙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구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① 본회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해당 기구에 있다.
② 본회 대표자 및 본회 산하기구는 사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기록물과 회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사무처리

제6조(사무처리의 원칙) ① 정확과 투명성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회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이 업무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배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②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집행위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 작성

제8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①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 등의 확인이 있을 때 성립 한다.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문서의 생산) ①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 기획과 업무 이후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② 각 산하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표준화된 서식으로 문서를 생산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문서에는 작성 일시, 작성자의 소속, 지위,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각 산하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①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소통국제화위원회를 통하여 영문화된 문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4용지로 한다.

제11조(문서의 서식) ① 의결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결석계
2. 회의 소집요구서 및 연서명 명단
3. 회의 소집·결과 공고문
4. 회의록
5. 회의 안건지 및 자료집

- ② 집행기구 및 전문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각종 공문
 2. 집행위원 명단
- ③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이외 자치기구는 필요할 때 자치규칙에 따라 산하 의결기관, 집행기관에서 문서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치규칙
 2. 자치규칙 개정 작업과 관련된 기록물
- ④ 본회 산하기구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 문서를 생산한다.
1. 각 기구의 예산안·결산
 2. 사업집행에 대한 영수증빙내역
 3. 고정자산의 목록

제12조(문서의 관리) ①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각 산하기구는 생산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본회 회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3조(기록물에 대한 의무)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하기구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각 산하기구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할 의무를 지닌다.

④ 기록물 관리기관은 생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1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책임자는 기록물을 중앙집행위원회와 정기적으로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③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의 보존) ① 특정 기구에 속한 기록물은 해당 기구를 단위로 하여 보존한다.

② 기록물은 기록물의 생산 일시를 단위로 하여 보존한다.

- ③ 본회의 산하기구는 기록물 목록을 생산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이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 ④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제16조(기록물 관리기관) ① 전학대회는 본회 산하기구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록물 관리의 총괄·조정과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 2. 기록물 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과 기록물 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 3.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과 표준화
- 4. 기록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교류·협력
- 6. 그 밖에 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기록물의 보관) 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

- 1. 의결기구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 안건지, 자료집 및 회의록
- 2. 총선거에서 생산된 정책공동자료집, 선거보고서 등의 각종 선거 관련 자료
- 3. 총학생회장단 인수위원회의 인수·인계보고서
- 4.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감독보고서
- 5.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관련 자료
- 6.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
- 7. 그 밖에 기록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기록물

제5장 기록물의 공개

제18조(기록물 공개 원칙) 본 세칙이 규정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정보공개청구) ①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②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인쇄 기록물의 원본은 대여할 수 없으며, 기록물 관리기관 내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통해서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③ 기록물 관리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을 제공한다.

제20조(정보공개 제한)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2.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 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제21조(기록물의 활용) ① 회원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는 본회의 기록물을 학술, 행정, 의사 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각 기구의 업무 중 누락된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제22조(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① 본회는 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점, 거주 생활관 주소를 포함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그 밖에 회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③ 문서 작성 및 기록물 관리 시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기록물관리규칙) 기록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록물관리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KAIST 학부 총학생회 세칙 제6호]

2016.05.29. 제 정 2017.11.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1~4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5~13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 운영	14~15
제2절	심사	16~22
제4장	보칙	2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생회칙」 제8장 제5절에 의한 문화자치기금이 본회 회원의 주체적인 문화 형성과 그 활동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문화자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① 본 세칙에서 "신청자"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신청한 개인, 소모임, 단체를 말한다.
② 본 세칙에서 "행사"란 신청자가 문화자치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본 세칙에서 "심사"란 신청 행사의 문화자치기금 지원의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는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④ 본 세칙에서 "지원금"이란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행사에 지급되는 문화자치기금을 말한다.

제2장 문화자치위원회

제5조(목적)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6조(지위) 문화자치위원회는 본회 산하 전문기구에 소속한다.

제7조(업무와 권한)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문화자치기금의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 문화자치기금의 홍보 및 지원 행사 장려
3.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무 수행

제8조(구성) ①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③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④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9조(위원장)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제11조(소집) ①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및 의결)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문화자치기금

제1절 기금운용

제13조(기금의 구분) 문화자치기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학생회비기금: 학생회비 중 문화자치기금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기금
2. 학교지원기금: 학교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학생회비기금은 「학생회칙」 제184조에 따라 관리되며 운용의 책임은 문화자치위원회에 있다.

② 학생회비기금 중 총액에서 총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③ 문화자치위원장은 매 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기금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월된 학생회비기금
2. 신청자 및 신청행사 현황
3. 심사 결과 및 지원금 총액(신청자 및 신청행사 별 지원금 명시)

제2절 심사·지원금 지원

제15조(신청 자격) ① 문화자치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2. 본회 정회원인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 ④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제16조(심사 신청) ① 제15조를 만족하는 신청자는 상시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개최 30일 이전인 행사로 한정한다.

제17조(심사 구분) 심사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

1.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한 행사의 지원 금액 결정
2. 사후심사: 행사 진행 후 그 성과와 지원금 활용 평가

제18조(사전심사)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반하여 신청 직후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단, 신청자는 회의 개회 48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자치기금 지원 신청서
2. 행사 실사서 및 예산안
3. 행사 세부추진 계획 및 비용추산 근거자료

② 사전심사는 신청자의 행사 예산에 따라 분류한 항목 별로 지원금을 분할 승인한다.

③ 심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1. 신청자 단체의 구성 등이 부적합할 경우
 2. 신청자의 행사가 제2조의 문화자치기금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 ④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 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결정)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② 연간 학생회비 기준 회당 2%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후심사)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

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②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③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④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 반환) ① 제19조의 기준안에 따라 행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② 행사 일부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을 부분 반환한다.
- ③ 신청자가 제1항 혹은 제2항의 지원금 반환에 불응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문화자치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하거나 전학대회에 「학생회칙」 제44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①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②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①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 ②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